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[별지 제24호서식]

피 의 자 신 문 조 서 (제 회)

피의자

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. . .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(은) 특별사법경찰리 를(을) 참여하게 한 후,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.

1.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.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3.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4.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는가요
답

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
답

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
답

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.